Asian Tax Journal Vol.27, No.3 (October 2026) pp.209－249 https://doi.org/10.35850/KJTA.27.3.8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ISSN 3140－6092

국외거주 성년 직계비속의 독립생계와 세법상 세대 판정에 관한 소고

: 주택세제상 국외소득의 인정범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Adult Lineal Descendants Residing Abroad and the Determination of Household Status under Tax Law

: Focusing on the Scope of Recognition of Foreign-Source Income for Housing Taxation

서영진* · 박 훈**
Young-Jin Suh · Hun Park

〈요 약〉

본 연구는 국외 근로소득으로 독립생활을 하는 미혼 성년 직계비속이 해당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만을 이유로 부모와 별도 세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지방세법령, 소득세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 관련 판례와 조세심판결정, 미국·일본·영국의 제도를 규범적으로 분석한다.

연구 결과, 세대 판정은 세목별 주택 수 산정과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가족 간에 납세의무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한다. 또한 국외거주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지위를 구별한다. 해석론으로는 법령상 소득유형에 해당하고 실제 지급과 귀속이 확인되는 국외소득을

* 제1저자(First Author), 법무법인(유) 세종 조세그룹 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 Researcher, Tax Group, Shin & Kim LLC ; Ph.D., The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yjsuh624@uos.ac.kr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Professor, The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phn@uos.ac.kr

Received 1 October 2026 Accepted 19 October 2026

국내 과세권의 유무나 거주자 지위만을 이유로 독립생계 판단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다만 국외소득을 산입하더라도 주민등록·연령·혼인 여부·실제 가계분리 등 다른 요건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비교법적으로는 가족의 귀속범위를 세목별로 정하고, 주소·소득·부양·생활근거지를 구별하며, 국외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입법론으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국내외 소득의 동일한 산입원칙을 명시하고, 외화환산·산정기간 등 소득 산정기준과 대체자료를 포함한 증빙방법을 정비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29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신설하여 상속 1가구 1주택 세율특례에 독립생계 예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독립된 주거와 가계 운영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재에 대한 반증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하여 성년 직계비속이 직접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와 과세정보 보호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국외소득을 경제적 자립의 실질적 판단자료로 인정하면서도, 허위 급여·명목상 주소·자금 반환 등을 이용한 형식적 세대분리를 구체적인 부인사유와 사후확인을 통해 통제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국외거주 성년 직계비속, 세대 판정, 독립생계, 국외소득, 별도 세대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 that unmarried adult lineal descendants residing abroad who live independently on foreign-source employment income may not be recognized as a separate household from their parents solely on the basis of whether that income is subject to Korean taxation.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s a normative analysis of the Local Tax Act, the Income Tax Act, and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their subordinate legislation, relevant court precedents and Tax Tribunal decisions, and the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The study finds that the determination of household status serves as a criterion for counting homes and determining eligibility for special tax treatment under each tax, rather than transferring tax liability or ownership among family members. It also distinguishes residence abroad from nonresident status under the Income Tax Act. As a matter of statutory interpretation, the study argues that foreign-source income falling within a statutory income category, whose actual payment and attribution to the recipient are verified, cannot be excluded from the assessment of financial independence solely on the basis of Korea's taxing jurisdiction or the recipient's tax residency status. However, including such income does not waive other requirements relating to resident registration, age, marital status, or the actual separation of household finances. The comparative analysis suggests that the scope of family membership for tax purposes should be defined separately for each tax ; that address, income, support, and the center of one's life should be distinguished ; and that facts concerning circumstances abroad should be verified through objective evidence.

As legislative reforms, the study recommends expressly providing in Article 28-3(2)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for the equal treatment of domestic-source income and foreign-source income in assessing financial independence, and refining income calculation standards, including foreign currency conversion and calculation periods, as well as evidentiary methods, including alternative documentation. It also proposes adding paragraphs (4) through (6) to Article 29 of the same Enforcement Decree to introduce a financial independence exception for the special acquisition tax rate applicable to an inherited home under the one-household, one-home rule. Based on independent living arrangements and the separate management of household finances as of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this exception would permit evidence rebutting the household status indicated by resident registration. In addition, the study recommends establishing procedures that allow adult lineal descendants to submit documentation directly, together with standards for protecting taxpayer informa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presenting criteria that recognize foreign-source income as substantive evidence of economic self-sufficiency while addressing merely nominal household separation involving fictitious wages, nominal addresses, or the return of funds through specific grounds for denial and subsequent verification.

〈Key words〉 Adult Lineal Descendants Residing Abroad, Determination of Household Status, Financial Independence, Foreign-Source Income, Separate Household

Ⅰ. 서 론

본 연구는 미혼인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성년 직계비속[1]이 국외에서 근로소득을 얻어 독립적으로 생활하더라도 부모와 별도 세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 직계비속은 일정 수준의 소득으로 자립하고 주민등록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반면, 국외에서 받은 급여가 독립생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된다면, 같은 수준의 경제적 자립을 이룬 해외 취업자에게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된다. 이러한 차이는 부모가 국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성년 직계비속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보유한 성년 직계비속의 부모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2]

다만 현행 제도가 모든 국외소득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조심 2022지1837 결정[3]은 비거주기간에 발생한 국외급여를 제외한 반면, 조심 2023지1660 결정[4]은 거주자가 받은 국외급여를 인정하였다. 두 결정은 소득을 얻은 사람의 거주자 지위와 적용 법령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국외근무 자체가 아니라, 독립생계 판단에 필요한 소득의 범위를 소득세법상 국내 과세범위와 연계하여 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 이를 긍정하면, 실제로 독립생계를 유지해 온 성년 직계비속도 국내 과세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주택 보유에 따른 세부담을 지

1) 이 글에서 '성년 직계비속'은 민법 제4조에 따라 성년에 이른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말하며, 주로 부모의 성년 자녀를 가리킨다. '자녀'라는 표현은 미성년자와 성년자를 구별하지 못하므로, 실제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성년자가 법령상 부모의 세대에 포함되는 문제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 법령의 문언을 인용하거나 각 규정의 인적 적용범위를 설명할 때는 해당 법령의 원문 표현('자녀', '직계비속')을 따른다.

2)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3) 조세심판원 2023. 6. 9. 조심 2022지1837 결정.

4) 조세심판원 2024. 3. 25. 조심 2023지1660 결정.

게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문제에 관하여 해석론과 입법론의 두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선 해석론상으로는 법령이 정한 소득유형에 해당하고 실제 귀속이 확인되는 국외소득을 독립생계 판단을 위한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해당 소득에 대한 국내 소득세 과세 여부와 그 소득을 바탕으로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입법론상으로는 국외소득의 산입원칙을 명문화하고,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세율 특례(이하 "상속 1가구 1주택 세율특례")에 실제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성년 직계비속을 위한 예외를 마련해야 한다.

분석을 위해 연령은 만 19세 미만,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만 30세 이상의 세 범주로 구분하고[5], 만 30세에 도달한 사람은 마지막 범주에 포함하며[6], 혼인 여부는 연령과 별도로 판단한다. 이러한 구분은 미성년자와 성년자를 구별하는 한편, 성년자에게도 적용되는 30세 기준의 기능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글에서 '국외거주'는 생활 장소를 나타내는 사실적 표현으로 사용하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재외국민 또는 외국 국적자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7]

선행연구는 과세단위와 주택 수 산정기준의 불일치, 30세 미만 성년 직계비속의 독립생계, 국외 가족정보의 확인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박훈 2020, 123－135 ; 정혜윤・박훈 2021, 24－28 ; 마정화・소준영 2020).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독립생계 판단에 산입되는 국외소득의 법적 범위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독립성이 유사한 국내외 거주 성년 직계비속을 비교하고, 주민등록제도의 차이와 관련 자료의 확인 곤란을 근거로 한 반론도 함께 검토한다.

취득세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유상취득 중과와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상속 1가구 1주택 세율특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세대 귀속이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상속세・증여세는 독립생계 판단과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만 다룬다.

이하 제Ⅱ장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연령, 국외소득, 주민등록 및 증명에 관한 해석상 쟁점을 관련 해외 제도와 판례를 참조하여 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세대 귀속이 부모와 성년 직계비속에게 미치는 효과를 세목별로 살펴보고, 제Ⅴ장에서는 주요국 제도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국외소득 산입과 독립생계 예외에 관한 입법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는 논의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

5) 민법 제4조.

6) 민법 제158조.

7) 소득세법 제1조의2.

Ⅱ. 선행연구의 검토

1. 과세단위와 가족의 범위에 관한 연구

주택세제는 납세의무자를 개인으로 정하면서도 비과세·감면 또는 중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를 가족 단위로 산정하기도 한다. 선행연구는 이러한 과세단위와 판정단위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개인단위 과세로의 전환을 우선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세대 기준을 유지한다면 주민등록을 기초로 일차적으로 판단하되, 실질적인 생계관계에 관한 증명을 병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더하여 세대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대상에 관한 기본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박훈 2020, 117, 133－135).

한편, 재산의 명의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부부 합산과세를 재검토하자는 견해도 있다. 합산에 따른 불이익을 조정한다면 부부 합산과세도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이동식 2020). 이는 가족관계를 고려하는 세제의 타당성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보다, 구체적인 차별의 내용과 이를 완화하는 조정장치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의 가족과세 연구는 혼인 여부와 소득배분 방식에 따른 세부담을 비교하고, 개인단위 과세가 형평성 측면에서 갖는 장점을 평가하였다(Alm and Melnik 2005). 다만 이 연구는 당시의 소득세제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 주택세제의 주택 수 합산을 직접 분석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과세의 근거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한 성년 직계비속의 주택까지 합산해야 한다는 결론이 곧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2. 주택 관련 과세기준과 과세집행에 관한 연구

취득세에 관한 정책연구는 30세 미만 성년 직계비속의 소득과 독립생계 여부, 주민등록을 이용한 중과 회피, 국외 가족정보의 부족 문제를 함께 검토하였다(마정화·소준영 2020). 후속 연구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에 기재되는 정보와 그 이용범위에 따라 과세집행에 차이가 발생함을 분석하였다(허원제·김진아 2022). 이러한 연구는 실체적 요건의 적용이 과세관청의 자료확인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외국인에 대한 과세집행의 어려움과 내국인이 얻은 국외소득을 법적으로 배제하는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세법과 주민등록법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실제 생활관계를 반영한 세대 구분이 전입신고의 수리 등 주민등록상 행정절차와 충돌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우병탁·김완용 2022). 따라서 주민등록을 과세요건으로 활용할 때는 등재 내용뿐 아니라 등록이나 정정에 이르게 된 법적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한다.

주택 수 산정에 관한 연구는 특정 재산 자체를 주택으로 과세하는 문제와 다른 주택의 세부담을 결정하기 위해 그 재산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문제를 구분하였다. 또한 공부상 용도와 주거 가능한 구조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정혜윤・박훈 2021, 24－28, 51－52). 이는 실제 생활관계를 언제나 공부상 기재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와는 구별된다. 본 연구에서도 가족의 인적 범위를 정하는 단계와 해당 가족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주택 수에 산입하는 단계를 나누어 검토한다.

관련 규정의 복잡성을 분석한 연구는 빈번한 법령 개정, 동일한 표현의 상이한 의미, 일반규정과 예외규정 사이의 불명확한 관계를 문제로 지적하였다(장재형・김동수 202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외 취업・유학・귀국 등 개별 유형마다 예외를 추가하기보다, 성년 직계비속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공통요건을 정립하고 세목별 차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세대단위 합산의 법적 정당성, 과세집행 및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검토하고, 개인의 주된 거주주택을 중심으로 과세체계를 전환하자는 견해도 제시되었다(황범석 2026, 223－228). 이에 비해 본 연구는 현행 독립생계 예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외급여를 어떠한 소득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세대단위 합산을 유지하더라도, 경제적 자립 정도가 같고 소득의 발생지만 다른 성년 직계비속을 달리 취급하는 문제는 개선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3. 국외거주자의 소득과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

국외소득의 산입 여부는 세법상 차용개념의 해석과 관련된다. 한 세법이 다른 세법의 용어를 원용하더라도 그 범위는 해당 규정의 문언과 목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연구가 있다(박훈 2019). 이러한 관점에서는 소득의 종류와 계산방법을 납세의무자의 지역적 과세범위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개념을 원용한 취득세 규정을 해석하는 데 직접적인 검토기준이 된다.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가족 관련 조세혜택을 다룬 연구는 국내 소득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납세자의 개인적 사정이 어느 국가의 세제에서도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였다(Roughou 2024). 조세 차별에 관한 연구는 적절한 비교대상과 차등 취급을 초래하는 규정을 먼저 특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Mason and Knoll 2012). 이들 연구는 소득의 발생지와 경제적 능력의 관계를 검토하고, 국외소득 배제에 따른 차등 취급을 분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일본의 조세정보 수집과 공적・사적 급부의 통합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국외거주 친족의 부양공제를 사례로 들어, 증빙 요건을 강화하기에 앞서 공제를 인정할 친족의 범위를 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확인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Takahashi 2017). 부양공제와 주택 수 산입은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실체적 요건과 증명방법을 구분하여 설계해야 한다는 관점은 본 연구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4. 선행연구의 평가와 본 연구의 과제

기존 연구가 세대 기준 자체의 정당성과 과세집행에 주목하였다면, 본 연구는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미혼 성년 직계비속의 국외소득을 배제할 때 발생하는 추가 세부담에 초점을 맞춘다. 해석론상 핵심 과제는 다른 세법에서 원용한 소득 개념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있고, 입법론상 과제는 국외소득의 인정 범위와 주민등록·연령 요건을 조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미성년자 및 만 30세 이상 성년 직계비속과의 비교를 병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외소득 산입에 관한 해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별도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구분하고자 한다.

Ⅲ. 국외거주 성년 직계비속의 세대 판정에 관한 해석상 쟁점

1. 판정기준과 자료의 검토

가. 거주자 지위와 세대 귀속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8] 국내 주소의 유무는 국내 가족관계와 자산 보유 등 생활관계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9] 따라서 국외에서 근무하거나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국내 주민등록의 유지 여부 역시 거주자 지위를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일 뿐, 그 지위를 확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성년 직계비속이 비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세대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국외체류가 취학·근무 등에 따른 일시퇴거에 해당하는지, 부모와의 실질적인 공동생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는 각 세목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의 '1세대' 정의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으로,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정이 아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은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재외국민등록과 주민등록법상 신고 역시 구분해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내 30일 이상 거주 목적의 입국 신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90일 이상 해외체류 예정자의 주소 신고는 각각 목적과 요건이 다르다. 따라서 재외국민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의 주민등록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세대 귀속을 판단할 때는 국외 체류자격, 실제 생활근거지, 각 법률에 따른 등록상 지위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은 과테말라 영주권을 보유하고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국외소득을 얻은 원고

8) 소득세법 제1조의2.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들에 대해서도 국내외 생활관계를 종합하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10] 이 사례는 국외체류 사실과 소득원만으로 거주자 지위를 결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주소 판정에서 객관적인 생활 실체를 중시하였다. 이른바 武富士 사건에서는 성년 직계비속이 약 3년 반 동안 홍콩에서 실제로 근무・거주한 사정을 토대로 홍콩 주택을 생활의 본거로 인정하였다. 절세 동기가 있었거나 귀국 시 부모의 일본 주택에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 생활의 본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11] 이는 국내 가족관계나 일시적인 귀국만으로 국외 생활근거지를 부정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판결은 증여세 사건으로서 주택세제의 세대 판정을 직접 다룬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생활 실체의 판단에 관한 참고자료로 한정하여 검토한다.

나. 세목별 기준과 심판결정의 활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은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의 세대 범위를 정한다. 본 연구가 주로 다루는 제13조의2 제1항의 유상취득 중과에서는 취득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12]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13]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세대의 기본 범위로 삼는다. 다만 배우자[14],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및 일정한 요건[15]에 해당하는 부모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같은 세대에 포함한다.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상속취득 시 가구의 범위를 상속인을 기준으로 정하고, 연령에 따른 의제규정에서는 '직계비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두 규정은 적용대상과 친족의 범위가 다르므로, 어느 한 규정의 독립생계 예외를 다른 규정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상호 준용할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는 이들 지방세와 달리 주소・거소 및 실질적인 공동생계를 중심으로 세대의 범위를 판단한다.[16]

재산세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3항에 따라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을 같은 세대에 포함한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에는 이와 동일한 연령 의제규정이 없고, 공동생계 여부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세대 구성에 필요한 연령・소득요건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세목별로 가족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는 것은 납세자의 세율・비과세・감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택 소유자 사이에서 납세의무 자체가 이전되는 것을 의미

---

10)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두31235 판결(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6. 5. 14. 선고 2025누7645 판결에 따른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11) 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平成23年2月18日判決(平成20年(行ヒ) 第139号・集民236号71頁).

12)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13)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14) 사실혼은 제외하지만, 법률상 이혼을 한 사람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15)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16)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하지는 않는다. 세목별 판정기준과 주요 과세효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Table 1〉 Housing-Related Tax Burden by Taxpayer Based on the Determination of Household Status

세목	납세자	주요 판정기준	같은 세대인 경우	별도 세대인 경우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	주택 취득자	주민등록 기준. 미혼 30세 미만 자녀는 같은 세대로 의제. 성년인 경우 소득·독립생계 요건 충족 시 예외	가족의 주택 수 합산. 새로 취득하는 부모 또는 성년 직계비속에게 8%·12% 중과 가능	취득자 세대의 주택 수로 판정. 일반세율 1~3% 적용 가능. 지역·주택 수 등 요건 별도 확인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상속인	상속인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가구 판정. 일반적인 소득 예외 없음	성년 직계비속의 다른 국내 주택으로 상속인의 세율특례 배제 가능. 특례 미적용 시 일반세율(농지 외) 2.8% 적용	상속인 가구가 1주택이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특례세율 0.8% 적용 가능
양도 소득세	주택 양도자	실제 공동생계 및 배우자 없는 사람의 세대 구성에 필요한 연령·소득요건	성년 직계비속의 국내 주택으로 부모 등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가능. 중과 여부는 별도 판단	양도자 세대의 주택 수와 보유·거주기간으로 판정. 비거주자인 성년 직계비속 본인의 비과세 제한은 별도 검토
재산세	각 주택 소유자	주민등록 기준.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은 별도 등록 시에도 같은 세대에 포함	세대 내 다른 주택으로 소유자의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배제 가능	소유자별 소속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가격 등 특례요건 심사. 취득세의 30세 기준은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
종합 부동산세	각 주택 소유자	공동생계 및 1세대 1주택자 요건으로 판정. 과세표준은 인별 합산	부모 등의 12억 원 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제한 가능. 성년 직계비속의 주택 가액을 부모에게 합산하지 않음	거주자 등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공제 및 법정 세액공제 가능. 일반 개인 공제액은 9억 원

주1) 자료 : 본문에서 검토한 각 세법.
주2) 부모·성년 직계비속이 서로 다른 국내 주택을 가진 경우의 주요 효과이다. 가격·보유·거주기간, 주택 수 제외 등 다른 요건과 부가되는 세금은 별도로 적용한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과 실제 공동생계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은 해석의 출발점이 다르다. 지방세기본법 제17조의 실질과세원칙만으로 명시적인 연령 의제나 주민등록 요건을 배

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동생계가 법정 요건인 경우에는 실제 생활관계를 살펴야 하고, 주민등록 자체에 법적 효과가 부여된 경우에는 그 효과와 예외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도 가족단위가 모든 세목에 공통되는 하나의 개념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제152조는 부양 관련 조세혜택의 목적에 따라 적격자녀(qualifying child)와 적격 친족(qualifying relative)을 구분한다.[17] 적격 자녀에 대해서는 친족관계・연령・주된 생활근거지와 자기 부양비의 부담 여부를 각각 심사하고[18], 원칙적으로 과세연도 중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납세자와 주된 거소(principal place of abode)가 같을 것을 요구한다.[19] 그리고 연령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녀가 적격 친족으로 인정되려면 법정 소득한도와 납세자가 부양비의 과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20] 이는 가족관계・주소・소득・실제 부양・생활근거지를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징표로 보지 않고, 제도의 목적에 따라 독립된 요건으로 정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조세심판결정을 주요 실무자료로 활용하는 이유는 확보한 공개자료 중 국외급여의 산입과 취득 당시의 생활능력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판절차에서는 부과처분이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소득・등록자료와 처분청의 소득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다투어진다. 지방세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심판결정의 자료적 의미를 뒷받침한다.[21] 다만 본 연구에서 확인한 사례는 연구 쟁점과 직접 관련된 자료일 뿐, 전체 분쟁의 빈도나 관련 법원 판단의 부재를 보여주는 대표 표본은 아니다.

심판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지만, 그 판단 이유가 법원이나 다른 사건의 판단을 일반적으로 구속하지는 않는다.[22] 따라서 같은 쟁점에 관한 법원 판결이 확인되면 이를 함께 대조하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사건에서는 대법원의 상고기각과 원심의 판결 이유를 구분하여 인용한다. 또한 심판청구의 인용・기각 여부나 결정 건수만으로 해석의 우열을 판단하지 않고, 결정 사이의 차이가 동일한 법령 아래에서 발생한 것인지도 확인한다.

17) 26 U.S.C. IRC § 152(a).

18) 26 U.S.C. IRC § 152(c)(1).

19) 26 U.S.C. IRC § 152(c)(1)(B).

20) 26 U.S.C. IRC § 152(d)(1).

21)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22) 국세기본법 제80조 ;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2. 연령에 따른 별도 세대 인정요건

가.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성년자의 구별

미혼인 19세 미만 자녀와 미혼인 19세 이상 30세 미만 성년 자녀는 모두 취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같은 세대로 의제되지만, 소득에 따른 예외의 적용범위는 다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는 미성년자를 예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세대 예외를 적용할 수는 없다. 반면 성년 자녀는 부모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취득월 직전 12개월 동안의 기준소득을 충족하며,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취득일 현재의 경제활동 요건은 시행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의 적용대상 규정에서 정한다. 동거봉양, 세대 전원의 출국, 취득 후 60일 이내의 주소 이전에 관한 예외는 각각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이상의 예외가 요구하는 것은 일정 수준의 소득과 실질적인 자립 능력이다. 성년 직계비속의 소득이 부모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기준소득을 충족하더라도 부모가 생활비 전반을 계속 부담한다면 실제 독립생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외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관리한다는 사정만으로 관리능력을 부정할 수도 없다. 임대관리의 수행 여부와 관련 비용의 부담 등을 통해 실제 관리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과세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서로 독립된 두 사례를 상정한다. 각 사례에서 부모는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27세의 미혼 성년 직계비속은 부모와 주민등록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반 주택을 유상취득한다.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과 과세표준은 모두 5억 원이다. 첫 번째 성년 직계비속은 취득월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이 별도 세대 판정에 필요한 기준소득 이상이고, 나머지 요건도 충족한다. 두 번째 성년 직계비속은 같은 기간 비거주자로서 국외에서 근로하여 얻은 국외원천 근로소득만 있다. 이 소득은 조심 2022지1837 결정의 해석에 따라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두 사례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일시적 2주택 및 그 밖의 중과배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첫 번째 성년 직계비속은 일반세율 1%에 따른 취득세 500만 원을 부담한다. 두 번째 성년 직계비속은 부모와 같은 세대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8%에 따른 취득세 4,000만 원을 부담한다. 여기서 3,500만 원의 세액 차이는 각 성년 직계비속의 주택 취득에서 발생하며, 부모가 종전에 납부한 취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23] 이 비교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을 제외한 취득세 본세만을 대상으로 한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성년 직계비속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지와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의 세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함께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은 소득에 따른 세대

23)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제13조의2 제1항 제2호.

구성 예외에서 미성년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면서도 법정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국내외에서 부모와 실제 공동생계를 유지하는 직계비속이 국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은 부모가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4] 반면 직계비속에게 적격 소득과 독립생활이 인정되면 부모는 자신의 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직계비속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직계비속 자신의 비과세 적용자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25]

나. 상속 1가구 1주택 세율특례의 한계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는 상속인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을 가구의 기본 범위로 정하면서,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 등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같은 가구에 포함한다. 이 규정에는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와 같은 일반적인 소득·독립생계 예외가 없다. 따라서 직계비속이 국내외에서 독립하여 생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예외를 원용하기는 어렵다. 이는 상속주택에 대한 일반적인 감면 여부가 아니라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특례세율 적용에 관한 문제이다.

주민등록이 형식적으로 유지되었는지와 연령에 따른 의제가 적용되는지는 구분해야 한다. 주민등록 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더라도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연령 의제는 여전히 남는다. 조심 2026방0136 결정[26]의 직계비속은 30세 이상이었으므로, 그 결론을 30세 미만 직계비속에게 확대하려면 연령 의제규정에 관한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 국외거주 성년 직계비속에게만 해석을 통하여 소득 예외를 인정한다면, 같은 정도로 자립한 국내거주 성년 직계비속과 새로운 차등 취급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로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상속주택을 취득한 상속인이다.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성년 직계비속이 상속인의 가구에 포함되면 상속 1가구 1주택 세율특례가 배제될 수 있다. 취득세 중과 규정에서 해당 직계비속의 독립성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독립한 직계비속을 상속인의 가구에 계속 포함할 정책적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일반적인 소득·독립생계 예외를 도입하려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

24)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제180조의2.

26) 조세심판원 2026. 6. 25. 조심 2026방0136 결정.

3. 독립생계 판단에서 국외소득의 인정범위

가. 소득 개념의 차용범위

독립생계 판단을 위한 소득요건은 성년 직계비속의 생활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 세대 판단 소득기준」(이하 "행정안전부고시")은 사업소득·근로소득·일정한 기타소득과 이에 준하는 경상적·반복적 소득을 인정대상으로 정한다. 비과세소득의 제외와 소득 종류별 필요경비의 차감도 함께 규정한다.[27] 2024년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역시 별도 세대 판정에 사용하는 소득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있다.

저축 인출액·차입금·증여금은 법령이 정한 소득과 구별된다. 국외소득을 산입하는 경우에도 지급의 법적 성격과 실제 귀속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30세 미만 성년 직계비속에게 요구되는 소득요건을 대체할 수는 없다.

차용개념을 해석할 때는 소득의 종류와 계산방법을 원용하는 것과 거주자 지위에 따른 지역적 과세범위까지 원용하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박훈 2019). 소득요건의 목적만으로 법령의 문언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과세범위를 정한 규정과 소득의 종류를 정한 규정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없다.

나. 거주자 지위에 따른 국외소득의 취급

조심 2022지1837 결정은 2022년 4월 6일 취득한 주택에 관하여, 직전 소득 산정기간 중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비거주자로서 얻은 일본 근로소득을 제외하였다.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소득이 거주자의 국외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을 유보하였지만, 그 금액만으로는 기준소득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근무하던 성년 직계비속이 부모와 별도 세대임을 전제로 일반세율의 적용을 구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에는 개정 시행령과 2022년 행정안전부고시가 적용되었다.[28]

반면 조심 2023지1660 결정은 일본에서 근무한 만 29세 성년 직계비속을 국내의 생활관계와 자산 등에 비추어 거주자로 인정하고, 국외급여를 기준소득에 산입하였다. 부모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성년 직계비속은 자신의 주택 취득을 세 번째 주택으로 보아 12%의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므로 1%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조세심판원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다만 취득일은 2021년 11월 12일로, 당시에는 소득세법 제4조를 직접 인용하던 구 지방세법 시행령[29]이 적용

27)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 제3조.

28) 조세심판원 2023. 6. 9. 조심 2022지1837 결정.

29)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된 것.

되었다.[30]

두 결정은 각각 거주자의 국외급여를 인정한 사례와 비거주기간에 발생한 국외급여를 제외한 사례이다. 적용법령도 다르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상반된 결정례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국외근무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였더라도 거주자 지위와 소득규정의 해석에 따라 별도 세대 인정 여부와 취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는 남는다. 이하에서는 현행 소득기준을 토대로 이 차이를 검토한다.

국외소득의 산입을 제한하는 견해는 소득세법 제4조가 거주자의 소득을 구분하고, 제3조가 비거주자의 과세범위를 제한한다는 점을 중시한다. 소득의 종류에 관한 규정만 분리하여 원용하면 동일한 법률용어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게 된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또한 국내 신고자료보다 확인하기 어려운 국외소득을 인정하면 중과 회피가 쉬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이 다주택 취득 중과의 예외를 정한다는 점에서 요건의 명확성과 증명의 신뢰성은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그러나 이 예외가 확인하려는 것은 소득세의 납부실적이 아니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다. 같은 금액의 급여로 자신의 주거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두 성년 직계비속의 생활능력을 국외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에 따라 달리 평가하기는 어렵다.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 급여가 근로 제공의 대가라는 소득의 성격을 잃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차등 취급의 타당성은 세액 차이를 비교하기에 앞서 해당 요건의 목적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행 행정안전부고시의 문언도 소득세법 제19조・제20조・제21조의 소득유형과 계산요소를 인용할 뿐, 비거주자나 국외원천소득을 별도로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인용은 해당 금원이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에 해당하는지와 그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외소득이 국내 과세권의 범위 밖에 있다는 것과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것 역시 별개의 문제이다. 다만 거주자의 소득을 전제로 하는 소득세법 제4조와 행정안전부고시의 포괄적 소득항목을 연결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반론은 남는다. 따라서 여기서 소득세법의 체계와 무관한 독자적 소득 개념을 새로 구성하려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고시가 정한 소득유형과 계산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귀속이 확인되는 국외소득을 독립생계 판단을 위한 소득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개별 소득유형을 인용한 법령의 문언과 경제적 자립 여부를 확인하려는 제도의 목적이 그 근거이다. 국외자료의 진실성은 지급과 귀속 여부의 확인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며, 자료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소득을 인정대상에서 미리 제외해서는 안 된다. 이는 조심 2022지1837 결정과 다른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현재 확립된 실무를 서술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외소득을 산입하더라도 주민등록・독립생계 등 다른 요건이 면제되거나 성년 직계비속에게 소득세법상 거주자 지위가 부여

30) 조세심판원 2024. 3. 25. 조심 2023지1660 결정.

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효과는 누가 주택을 취득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성년 직계비속이 주택을 취득하면 부모의 기존 주택을 합산하는지에 따라 본인의 취득세가 달라지고, 반대로 부모가 주택을 취득하면 성년 직계비속의 기존 주택을 합산하는지에 따라 부모의 취득세가 달라진다. 국외소득의 인정이 종전 취득 당시의 별도 세대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취득에 관한 세율 적용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세액의 환급이나 증액은 경정청구 등 관련 절차와 기간 요건에 따라 이루어지며, 국외소득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해석상의 불확실성이 부과·불복 과정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국외소득의 산입원칙과 증빙방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다. 소득 산정기간과 귀국자의 취급

취득세 관련 소득기준은 취득월 직전 12개월을 대상으로 한다.[31] 다만 계속적인 소득이 있었으나 일시적인 휴직·휴업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다른 기간의 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32] 산정기간 중 귀국한 성년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소득 발생 당시와 주택 취득 당시의 거주자 지위를 구분해야 한다. 취득일 현재 국내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에 발생한 국외소득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귀국 전에는 국외에서, 귀국 후에는 국내에서 근무한 성년 직계비속은 국내 급여만으로 기준소득에 미달하더라도 전체 산정기간 동안 독립생계를 유지하였을 수 있다. 국내 과세권의 유무를 기준으로 귀국 전 국외급여를 제외하면, 귀국 직후 본인의 주택 취득이 중과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택이 부모의 주택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의 해석에 따르면 같은 산정기간에 발생한 적격 소득은 모두 합산해야 한다. 이는 귀국자에 한하여 산정기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인정범위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다.

취득세의 취득월 직전 12개월 기준을 양도소득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문언에 따라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소득 산정기간과 부모와의 최소 별거기간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일정 기간의 소득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 내내 부모와 다른 주거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할 수는 없다.

기준소득을 충족한 경우에도 해당 소득이 실제로 성년 직계비속에게 귀속되고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외거주 성년 직계비속에게만 부모와의 모든 자금관계를 단절하거나 생활비 전액을 스스로 부담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먼저 동일한 소득과 가계관계를 가진 국내거주 성년 직계비속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추가 증명은 국외자료에 관하여 제기된 구체적인 의문을 해소하는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31)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

3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 제3조 제2항·제4조.

라. 취득 당시 경제활동과 위임의 범위

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의 경제활동 요건이 시행령상 소득 및 독립생계 능력을 구체화한 것인지, 별도의 현재 자격요건을 추가한 것인지가 문제 된다. 소득의 계속성과 주택 관리능력을 확인하려는 취지 자체는 합리적이다. 그러나 재직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행령상 독립생계 능력을 부정한다면 소득의 세부범위에 관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 다만 확인된 결정례가 경제활동 요건을 일반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전개해서는 안 된다.

조심 2024지0273 결정은 부모가 2023년 7월 주택을 취득할 당시 군 복무 중인 30세 미만 성년 직계비속을 별도 세대로 인정하였다. 해당 사안에서는 취득월 직전 12개월 동안의 적격 근로소득, 부모와 다른 주민등록, 임대 중인 본인 소유 주택의 관리·유지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성년 직계비속의 주택을 이유로 부모의 주택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모든 군 복무자에게 예외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취득 당시의 재직상태만으로 주택 관리능력을 부정하지 않은 사례로 이해해야 한다.[33]

행정안전부도 직업이나 사업자등록의 형식뿐 아니라 소득의 계속성과 규모, 주택의 관리·유지 가능성, 독립생계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회신하였다.[34] 국외근무 후 일시적으로 휴직하거나 귀국한 성년 직계비속의 생활능력도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판단이 행정안전부고시의 경제활동 요건을 일반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것은 아니다. 경제활동 요건과 시행령상 독립생계 능력의 관계는 시행령 단계에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4. 30세 이상 성년 직계비속 및 기혼 성년 직계비속의 세대 판정

가. 연령·혼인과 공동생계

30세에 도달한 성년 직계비속은 그때부터 '30세 미만'이라는 연령 의제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세대 구성자격과 실제 공동생계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취득세 중과와 상속 1가구 1주택 세율특례에서도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라는 일반요건은 남는다. 따라서 30세 이상 성년 직계비속도 부모와 같은 세대 또는 가구에 속할 수 있다. 반대로 부모와 적법하게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해당 지방세 규정상 별도 세대를 구성한 성년 직계비속에게 30세 미만 성년 직계비속의 소득기준을 다시 적용할 수는 없다. 동거봉양 등 별도의 예외는 각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공동생계 여부는 친족 간 경제적 지원의 존재 자체보다 통상적인 생활비 부담과 가계 관리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은 과거 자산소득 합산과세 사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33) 조세심판원 2025. 6. 9. 조심 2024지0273 결정.

34)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598, 2026. 2. 23. 질의회신.

는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35] 주택 양도소득세 사건은 아니므로 적용범위를 구분해야 하지만, 공동생계의 실체를 주민등록과 구별하여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2두50410 판결은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과 관련하여, 법령이 주민등록표 등재를 세대의 정의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1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를 뜻한다고 보았다. 미국에 정주한 배우자와 국내에 정주한 동생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안에서, 주민등록은 일차적 판단자료가 될 수 있으나 반대자료가 제출되면 실제 주거·생계의 공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형식과 실질을 구분하고 반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본 연구의 논지에 부합한다. 다만 도시정비법 사건이므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문 요건으로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9조의 적용을 직접 배제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일본 소득세법상 부양친족도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生計を一にする者)'일 것을 요구하지만, 동거를 절대적 요건으로 삼지는 않는다.[36] 일본 국세청 소득세 기본통달 2－47은 근무·수학·요양으로 별거하더라도 여가에 함께 기거하는 것이 통상적이거나 생활비·학자금·요양비를 계속 송금하면 생계를 같이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같은 가옥에 거주하더라도 명백히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면 별도의 생활단위로 인정한다.[37] 이는 부양공제에 관한 기준이므로 우리나라 주택세제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주소와 실제 공동생계를 구분하고, 송금의 존재뿐 아니라 목적과 계속성을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다.

기혼 성년 직계비속은 '미혼인 30세 미만'에 관한 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지, 실제로 가계를 공동 운영하는지는 여전히 문제 될 수 있다. 국내에서 혼인한 경우와 국외에서 배우자와 생활하는 경우 모두 해당 세목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성년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구성한 생활단위를 기준으로 검토하되, 혼인만으로 부모와의 세대 관계가 모든 세목에서 자동으로 분리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주민등록에 따른 가구 판정의 범위

상속 1가구 1주택 세율특례에 관한 사건에서 광주고등법원은 직업상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동생의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실제 생계는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시의 특례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38]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39] 주민

35)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36) 日本「所得税法」第2条 第1項 第34号.

37) 国税庁「所得税基本通達」2－47 ; 国税庁, Tax Answer No.1180「扶養控除」Q1.

38) 광주고등법원 2014. 8. 28. 선고 2014누5421 판결.

39)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42377 판결.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한 구체적인 이유는 원심판결에 제시되어 있다.

조심 2023지4423 결정은 혼인한 딸이 국외에서 생활하더라도 상속 당시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국내 주택을 보유하였다면 부모에게 상속 1가구 1주택 세율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장기간의 국외거주와 혼인만으로 주민등록에 따른 가구 귀속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이다.[40]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에 발생한 상속 사건에서 캐나다 거주 성년 직계비속의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행정상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를 상속인의 가구에서 제외하였다. 해당 성년 직계비속은 국외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2016년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한 사람으로, 국적상실자로 확인된 것은 아니었다.[41] 항소심은 주민등록 및 출국신고 제도의 취지에 관한 논거를 보충하였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42]

이 사건 제1심판결은 실질과세원칙을 언급하면서 2018년 말 신설된 재외국민 제외 문언을 확인적 규정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재외국민 제외 부분은 문언상 상속인을 수식한다. 따라서 이를 모든 재외국민 가족을 가구에서 제외하는 일반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의 목적과 실제 생활근거지를 고려한 판결의 결론을 지지한다. 다만 그 논증을 모든 국외거주 가족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상 공동생계 기준으로 확대하지는 않는다.

조심 2026방0136 결정은 2025년 상속 당시 30세 이상인 재외국민 성년 직계비속의 국외 재직과 생활근거지를 확인하고, 그가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 가구로 인정하였다.[43] 앞의 법원 사건이 재외국민의 재등록을 다루었다면, 이 결정은 종전 주소가 주민등록표에 계속 남아 있게 된 경위를 다루었다. 다만 결정 이유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7조를 직접 원용한 것은 아니다.

이들 사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은 국외거주 자체가 아니라 주민등록제도의 목적과 구체적인 등록 경위였다. 국내에서 새로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과 종전 주민등록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실제 독립생활을 반영한 결론은 지지할 수 있지만, 모든 국외거주 성년 직계비속에 대해 주민등록의 법적 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는 일반명제를 도출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으로 유사한 국내 별거 성년 직계비속에게는 같은 반증의 기회가 열려 있지 않다는 문제도 남는다. 주민등록제도의 차이는 개별 사건에서 구제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성년 직계비속의

---

40) 조세심판원 2024. 6. 19. 조심 2023지4423 결정.

41) 서울행정법원 2020. 8. 14. 선고 2019구합7706 판결.

42) 서울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54670 판결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두38765 판결.

43) 조세심판원 2026. 6. 25. 조심 2026방0136 결정.

독립성을 판단하는 일반기준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주민등록에 따른 가구 판정에 객관적인 독립생계 예외를 신설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득 예외를 이미 두고 있는 취득세 중과와 달리, 상속 1가구 1주택 세율특례에서는 입법 여부가 결론을 좌우한다.

다. 국내거주 성년 직계비속과의 비교

30세 이상인 국외거주 성년 직계비속이 형식상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남아 있다는 이유로 상속인의 가구에 포함되면, 그에 따른 세부담은 해당 직계비속이 아니라 국내의 상속인에게 발생할 수 있다.[44] 예를 들어 다른 국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배우자의 주택을 협의분할 등에 따라 단독 상속받고,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35세 성년 직계비속이 별도의 국내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가정한다. 해당 직계비속을 상속인의 가구에 포함하면 그 가구는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속 1가구 1주택 세율특례가 배제되고, 상속주택에는 농지 외 부동산의 상속취득 표준세율 2.8%가 적용된다.[45] 반면 해당 직계비속이 재외국민으로서 실질적인 생활근거지를 국외에 두고 있어 별도 가구로 인정되면 0.8%의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46] 과세표준이 5억 원이면 취득세 본세는 각각 1,400만 원과 400만 원으로, 그 차이는 1,000만 원이다. 이는 나머지 특례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고급주택 해당 여부와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목을 제외한 비교이다.

주민등록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같은 거주지에서도 별개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며, 독립된 호수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대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47] 다만 이는 주민등록 신고의 수리에 관한 판단으로, 과거에 성립한 취득세의 계산을 곧바로 변경하는 근거는 아니다. 별도 세대로 등록할 권리와 과세요건 성립 당시 주민등록의 법적 효과는 구분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주민등록을 달리한 30세 이상 성년 직계비속도 부모와 실제로 가계를 함께 유지하면 부모의 세대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국내 주택은 부모의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주민등록을 기초로 세대를 판단하는 지방세에서 별도 주민등록을 둔 성년 직계비속을 부모의 경제적 지원만을 이유로 다시 같은 세대에 포함하려면 해당 조문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국내거주 성년 직계비속과 국외거주 성년 직계비속의 비교는 다음의 표와 같다.

---

44)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45)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46)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47)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두39340 판결.

〈Table 2〉 Determination of Household Status of Lineal Descendants Residing in Korea or Abroad Based on Age and Living Arrangements

연령・생활관계	국내거주 직계비속	국외거주 직계비속	주요 과세효과
미혼인 19세 미만	취득세 중과의 소득・독립생계 예외 적용대상에서 제외. 다른 법정 예외는 별도 검토	급여 수령이나 국외체류만으로 성년자에 대한 예외 적용 불가	직계비속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라 부모 등의 주택 수에 영향
미혼인 19세 이상 30세 미만 (별도 등록・자립)	취득세의 기준소득・독립생계 등 요건 충족 시 별도 세대 인정 가능	국내거주 자녀와 같은 기본요건 적용. 국외급여의 종류, 거주자 지위, 적용법령에 따른 산입 문제 추가	주택을 취득하는 성년 직계비속 또는 부모의 중과 여부에 영향. 상속 세율 특례에는 같은 소득 예외 없음
미혼인 19세 이상 30세 미만 (같은 등록・자립)	취득세 중과에서는 부모와 다른 주민등록이 소득 예외의 요건이므로, 기준소득을 충족하고 자립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판정. 취득 후 60일 이내 주소 이전 등 개별 예외는 별도 확인. 양도소득세는 실제 생계와 연령・소득요건으로 판단	국외소득이 인정되더라도 등록요건은 자동으로 해소되지 않음. 해외체류 관련 예외 별도 확인	소득 산입만으로 모든 취득세 특례가 인정되지는 않음
30세 이상 (같은 등록・독립생계)	등록 중심의 지방세에서는 가족에 포함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는 실제 생계를 기준으로 판단	국내거주 직계비속과 같은 일반구조 적용. 일부 재외국민 사건은 특수한 등록 경위를 이유로 구제	국내 부모의 상속취득 세율과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등에 영향
30세 이상 (별도 등록・공동가계)	양도소득세에서는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음. 등록 중심의 지방세에서 합산하려면 별도 근거 필요	일시퇴거 여부와 공동생계의 지속 여부 확인. 국외거주만으로 세대 분리 불가	부모의 비과세・보유세 특례는 세목별 기준에 따라 판단
혼인한 성년 직계비속 (부모와 같은 등록)	'미혼 30세 미만' 의제에서는 벗어나지만, 같은 주민등록표 기재라는 일반요건은 남음	국외에서 배우자와 독립생계를 형성하였는지와 국내 등록의 효력을 각각 판단	혼인만으로 부모와 성년 직계비속의 모든 주택을 별도로 계산하지는 않음

주1) 자료 : 제Ⅲ장에서 검토한 각 세목의 법령과 결정례.

주2) 연령은 관련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만 30세인 경우는 '30세 이상'에 포함한다. 미성년자는 미혼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동거봉양・혼인・해외체류・60일 이내 주소 이전 등 개별 예외와 주택 수 산입 규정은 별도로 검토한다. 거주지는 국적이나 소득세법상 거주자 지위와 같은 의미가 아니다.

5. 취학·근무에 따른 일시퇴거의 범위

가. 생활관계의 계속성과 독립생활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사람을 가족의 범위에 포함한다. 이는 가족 구성원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하더라도 종전의 생활공동체가 유지되는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출국 목적이 취학이나 근무라는 사실과 그 국외체류가 일시퇴거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출국 전에 어떠한 세대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출국 후에도 부모와 성년 직계비속 사이의 공동생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일시적 유학생과 국외에서 계속적인 고용관계·주거·가계를 형성한 성년 직계비속은 달리 평가할 수 있다. 전자가 국내 주택을 보유하면 그 주택은 부모의 양도소득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후자가 별도 세대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주택은 부모의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는다. 또한 국내에서 이미 부모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성년 직계비속이 국외에 취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부모 세대에 다시 편입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국외체류가 일시퇴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 세대 구성에 필요한 연령·소득요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세대주(head of household) 세율 적용에 관한 판례도 별거 사유나 귀가의사만으로 종전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유지되는지를 판단하지 않았다. Prendergast 판결과 Elward 판결은 직계비속이 별도의 임차주택과 직업을 갖게 된 사안에서, 부모의 주택에 방이나 소지품이 남아 있고 장래 귀가할 의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택을 계속 주된 생활근거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48] 이는 부모의 주택과의 연결관계가 일부 남아 있더라도 별도의 주거·직업·가계가 계속 형성되었다면 독립생활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들 판결은 당시의 세대주 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것으로, 현행 미국 내국세법(IRC) 제152조의 부양가족 요건이나 우리나라 주택세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일시적 부재와 새로운 생활근거지의 형성을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참고할 수 있다.

국외 체류기간과 체류자격은 생활관계의 계속성을 판단하는 자료일 뿐, 성년 직계비속의 독립성을 확정하는 요건은 아니다. 성년 직계비속이 부모에게 부양비를 송금하는 경우와 부모가 성년 직계비속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그 의미가 다르다. 따라서 송금의 방향·목적·계속성과 실제 가계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가족 간에 경제적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년 직계비속의 독립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

48) James J. Prendergast, Petitioner, v.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Respondent, 483 F.2d 970 (9th Cir. 1973) ; Joseph F. Elward, Plaintiff-appellant, v. United States of America, Defendant-appellee, 484 F.2d 596 (7th Cir. 1973).

나. 세대 전원의 출국에 관한 예외

취득세 중과와 재산세 세율특례에서는 세대원 전원이 90일 이상 해외체류를 위해 출국하면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해당 세대를 별도 세대로 본다.[49] 성년 직계비속이 출국 전부터 부모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면, 그 성년 직계비속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출국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반면 출국 전까지 부모와 같은 세대에 속하였던 성년 직계비속 한 명을 별도 세대로 가정하여 세대원 전원 출국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예외에 따라 별도 세대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제공한 가족의 주택과 출국한 세대의 주택을 구분하여 취득세 중과나 재산세 세율특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와 같은 세대에 속한 미성년 직계비속이나 부모의 부양을 받는 성년 직계비속 한 명이 유학한 경우를 세대원 전원의 출국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해외체류 예외의 90일, 재외국민의 국내 신고와 관련된 30일 이상의 거주 목적, 소득세법상 거소 판정의 183일은 각각 목적과 적용요건이 다른 별개의 기준이다.

6. 독립생계의 증명책임과 증빙자료

가. 증명책임의 배분

증명책임은 중과 사건인지, 비과세 사건인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분할 수 없다.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세대원의 존재와 주택 보유 사실, 납세자가 주장하는 별도 세대 예외의 적용요건,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관계의 불일치는 각 요건에 따라 증명책임을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주택의 복합용도가 문제 된 사건에서 비과세 요건에 관한 사실과 비과세 범위를 제한하는 단서에 관한 사실의 증명책임을 구별하였다.[50] 이 판결은 가족의 세대 귀속에 관한 사건은 아니지만, 조세특례에 관한 분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실의 증명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울 수 없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다.

자료가 부족하여 적격 국외소득이 인정되지 않으면 주택을 취득하는 성년 직계비속이나 부모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사이의 차액을 부담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세율특례 등을 신청하면서 성년 직계비속의 국외소득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자료 보유자에게 요구되는 협조의무와 최종적인 증명책임은 구분해야 한다. 처분 이유에는 제출된 자료 중 어느 부분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공동생계에 관한 모든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

49)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3호・제110조의2 제3항 제2호.

50)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나. 증명대상과 자료의 평가

출입국기록은 국외 체류기간을, 주민등록과 재외국민등록은 각 등록의 내용과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이다. 재직증명서와 급여자료는 경제활동과 소득을, 주거비・생활비의 지출자료는 실제 비용부담을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의 자료만으로 독립생계에 관한 모든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는다. 국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국외체류 자체를 불리한 징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각 법정요건에 대응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미국 조세법원은 Goodwill-Oikerhe 판결에서 교육을 위한 국외체류가 일시적 부재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 다만 우크라이나에서 수학한 친족의 방학 중 실제 생활장소와 학비・항공료・생활비의 부담에 관한 학교・항공・송금자료, 과반 부양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제를 부정하였다.[51] 이는 국외체류를 이유로 공제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생활근거지와 실제 비용부담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사례이다. 따라서 국외거주 성년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자료가 국내 서식인지 국외 서식인지보다, 그 자료로 소득의 귀속과 금액, 생활비 부담, 생활관계의 계속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반대로 국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년 직계비속에게 모든 자료를 일률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도 안 된다.

취득세 소득기준에 관한 행정안전부고시는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지급명세서뿐 아니라, 그 밖의 객관적 자료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52] 법적으로 인정되는 소득이라면 국내 표준서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응하는 외국 자료를 배제하기는 어렵다. 고용관계, 급여 약정, 실제 지급내용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대조하고, 구체적인 불일치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외국의 과세소득 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은 공제 전 급여와 다를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의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 외국에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거나 국내 서류에 대응하는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없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며,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대체자료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다만 국외소득 자체를 산입할 수 없다는 법적 해석을 전제로 한다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의 존재와 금액에 관한 사실상 다툼과 해당 소득의 산입 여부에 관한 해석상 다툼을 구분하여 심리해야 한다.

다. 사실확인의 한계

성년 직계비속이 가족기업에서 급여를 받았거나 특정 시기에 소득이 집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소득을 부인할 수는 없다. 실제로 근로나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근무에 따른 급여와 허위 급여를 구별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확인이

51) Goodwill-Oikerhe v. Commissioner, T.C. Memo. 2026-18(decided Feb. 11, 2026).

5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 제5조.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사생활 전반을 조사할 권한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과 제출자료에 허위나 모순이 있는 사안은 사실확인의 범위를 달리해야 한다.

현행 취득세 소득기준은 확정신고자료 등을 활용한 사후확인 절차를 두고 있으며[53], 이를 통해 취득 당시 신고된 소득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취득 후 성년 직계비속이 실직하거나 국내로 귀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취득 당시 존재하였던 적격 소득까지 소급하여 부정해서는 안 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실제 생활관계는 인정하고 허위 사실은 배제해야 한다. 반면 명문의 의제규정이나 예외규정이 없어 해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입법 과제로 남겨야 한다.

Ⅳ. 세대 판정에 따른 부모와 성년 직계비속의 세부담

1. 주택 취득·보유·양도의 과세효과

가. 주택 수 산입과 납세의무자

가족의 세대 귀속이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려면 그 가족이 보유한 재산이 해당 세목의 주택 수에 산입되어야 한다. 국외거주 성년 직계비속이 부모와 같은 세대에 속하더라도 국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만으로 부모의 국내 주택 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국내 주택을 기준으로 하므로, 성년 직계비속의 국외거주와 주택의 국외 소재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독립생계 판단에서 국외소득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국외주택을 국내 주택 수에 포함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취득세 중과의 납세의무자는 새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다. 가족이 보유한 주택의 합산 여부는 취득자의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성년 직계비속의 독립성 인정 여부는 성년 직계비속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부모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만 세대의 주택 수가 늘어났다고 하여 언제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취득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세대의 몇 번째 주택인지, 법정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54]

국내 주택의 공유지분도 법정 예외가 없다면 주택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55]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유자 판정과 각 상속인의 가구 판정을 구

53)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 제6조.

54)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5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별해야 한다. 조심 2018지0069 결정도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상속인의 1가구 1주택 해당 여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56]

나. 부모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는 주택을 소유한 부모와 성년 직계비속이 각자 부담한다. 같은 세대의 가족이 별도의 국내 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세율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57] 반면 부모와 성년 직계비속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각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가격 등 특례요건을 심사한다. 재산세에서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에 포함하는 미혼 직계비속의 연령기준이 19세 미만이므로, 19세 이상 30세 미만 직계비속에게 취득세의 소득·독립생계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지, 해외체류 등에 따른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58]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성년 직계비속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부모의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면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 원을 공제하고 법정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개인에게는 9억 원의 공제가 적용된다.[59] 그러나 같은 세대라는 이유만으로 성년 직계비속 소유 주택의 가액을 부모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지는 않으며, 부모와 성년 직계비속은 각자 소유한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60] 또한 비거주자인 성년 직계비속이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고 하여 거주자를 전제로 한 특례까지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두33779 판결도 세대 귀속과 인별 납세의무를 구분하였다. 납세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같은 세대의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사안에서,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특례는 납세자 본인이 두 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다른 세대원의 소유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 근거는 종합부동산세가 납세의무자별 공시가격 합산을 근간으로 한다는 데 있다. 이 판결은 같은 세대라는 이유만으로 구성원 사이에 주택 소유와 과세표준이 이전되지는 않는다는 본 연구의 분석을 뒷받침한다.

부모가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는 같은 세대에 속한 성년 직계비속의 국내 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될 수 있다.[61] 반면 성년 직계비속이 별도 세대로 인정되면 부모의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수와 보유·거주기간 등을 판단한다. 고가주택에 관한 제한, 일시적 2주

---

56) 조세심판원 2018. 3. 7. 조심 2018지0069 결정.

57) 지방세법 제111조의2.

58)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5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제9조 제5항 내지 제9항.

60)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제8조 제1항.

6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택 특례, 다주택자 중과요건 등은 별도로 적용된다.[62]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된다고 하여 곧바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에 부가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해당 과세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63]

2. 성년 직계비속 본인의 비과세 요건과 국외이주

가. 별도 세대와 비과세 적용자격

국외거주 성년 직계비속이 부모와 별도 세대로 인정되면 그의 주택은 부모의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성년 직계비속이 자신의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당연히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0조의2는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제한하면서 해외이주, 국외 취학·근무 등에 관한 예외를 두고 있다. 이러한 예외에 따라 비과세가 인정되더라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이익을 누리면서도, 본인은 비거주자 과세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국외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조심 2023서9685 결정은 일본 기업에서 근무한 납세자의 국내 부양가족, 자금지원, 자산 등 생활관계를 종합하여 주택 양도 당시 그를 거주자로 판단하였다.[64] 이에 따라 양도자가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이 취소되었다. 다만 이 결정은 부모와 성년 직계비속이 같은 세대에 속하는지를 직접 판단한 사례가 아니므로, 국외소득의 산입이나 세대분리의 근거로 그대로 원용해서는 안 된다.

나. 출국일과 세대 전원 출국요건

해외이주 등에 관한 특례는 출국 당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할 것을 요구한다.[65] 부모와 이미 별도 세대를 구성한 성년 직계비속이 국내에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 세대의 전원 출국 요건을 부인할 수는 없다. 반대로 부모의 부양을 받는 성년 직계비속을 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세대에서 제외할 수도 없다. 이처럼 세대의 범위는 해외이주자가 양도하는 국내 주택의 비과세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출국일 역시 실제 이주의 경위와 법령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조심 2026소1566 결정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일시적 출국과 이후 세대원 전원의 실질적인 해외이주를 구별하여 비과

62)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63) 지방세법 제3절 제103조 이하.

64) 조세심판원 2024. 5. 1. 조심 2023서9685 결정.

6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

세를 인정하였다.[66] 다만 이 결정이 현지이주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6항을 일반적으로 배제하거나, 귀국과 재출국이 있을 때마다 양도기한을 새로 계산한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원 전원의 범위와 국외거주 성년 직계비속 본인의 비과세 요건을 구별하는 범위에서만 이 사례를 참고한다.

3. 상속취득의 세율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 1가구 1주택 세율특례에서는 상속인인 부모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성년 직계비속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지에 따라 취득세 본세 0.8%의 적용 가능성이 달라진다. 반면 국외거주 성년 직계비속 본인이 상속인이라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이 정한 재외국민인 상속인에 대한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조심 2026방0136 결정은 부모가 상속인이고 재외국민 성년 직계비속이 가구원으로 고려된 경우를 다룬 것으로, 재외국민 상속인에 대한 제한을 배제한 결정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로 주택을 상속한 사람과 상속인의 가구원으로 고려되는 성년 직계비속을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는 부모와 성년 직계비속이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지는 않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법정 범위의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67] 따라서 성년 직계비속이 실제로 독립생활을 시작한 시점은 공제에 필요한 공동생활이 단절된 시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공제액은 법정 담보채무액을 차감한 상속주택가액의 100%이며, 그 한도는 6억 원이다.[68] 이에 따라 성년 직계비속의 국외생활에 관한 판단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와 공제액을 통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인의 세부담에 영향을 미친다.

법정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동거하지 않은 기간은 10년의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취학이나 근무에 따른 예외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국외체류기간 전체를 실제 동거기간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69]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에 관한 제외규정도 별도로 적용된다.

이러한 차이는 성년 직계비속에게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세목에서 일률적으로 별도 세대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택 취득 당시의 경제적 자립과 그 이전의 적격 동거기간은 판단시점이 다르다면 함께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의 생활관계를 취득세에서는 완전한 독립생활로, 상속세에서는 특별한 근거 없이 계속된 공동생활로 주장할 수는 없다. 세목별 유불리가 아니라 실제 생활관계의 변화와 각 규정이 요구하는 기간에 따라 일관되게 판단

66) 조세심판원 2026. 7. 7. 조심 2026소1566 결정.

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2호.

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해야 한다.

4. 부모의 자금지원과 증여세

부모가 성년 직계비속에게 주택이나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성년 직계비속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성년 직계비속이 부모와 별도 세대로 인정되어 취득세 중과를 피하더라도 증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부양자의 통상적인 생활비와 교육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지만, 이를 축적하여 주택 등 재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까지 같은 성격으로 볼 수는 없다. 성년 직계비속의 소득과 통상적인 생활비 부담이 부모로부터 독립되어 있는지와 특정 지원이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지는 각각 판단해야 한다.

실제로 독립생활을 하던 성년 직계비속이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독립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부모가 생활비 전반을 계속 부담하면서 취득세 관계에서는 성년 직계비속이 완전히 자립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가계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가족 간 지원과 공동생계, 통상적인 생활비와 재산형성 자금을 구별해야 독립생계 판단과 증여세 과세가 각각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여부는 세대분리보다 수증자의 거주자 지위와 증여자와의 친족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거주자인 성년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재산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반면 비거주자인 성년 직계비속이 국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거주자 대상 공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국외재산의 증여에는 별도의 특칙이 적용된다.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인 성년 직계비속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증여재산공제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성년 직계비속에 대한 모든 증여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납세의무와 공제가 세대 판정과 별개의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 한정하여 다룬다.

독립생계의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국외급여를 인정하는 것과 허위 급여나 명목상의 증여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국외급여를 인정하려면 실제 근로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이 확인되어야 하고, 증여에 관해서도 실질적인 재산이전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 후에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년 직계비속의 과세상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정상적인 증여와 실제 독립생활에는 각각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허위 귀속이나 가장행위에는 그 성격에 맞는 과세규정으로 대응해야 한다.

Ⅴ. 국외소득과 독립생계 요건의 입법론

1. 국내외 성년 직계비속의 독립생계 인정요건 정비

가. 정비의 기본방향

제도 개선의 첫 번째 과제는 국외소득을 적격 소득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실제로 자립한 미혼 성년 직계비속의 근무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달리 취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국외소득의 산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속 1가구 1주택 세율특례에 독립생계 예외를 신설하고,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관계가 다른 경우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국외거주를 이유로 요건을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성년 직계비속에게 동일한 소득 및 생활관계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개인단위 과세로의 전환은 세율·공제·주택 수 산정뿐 아니라 가족 간 재산이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근본적인 개편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편 이전에도 실제로 독립한 성년 직계비속에 관한 현행 예외를 정비할 수 있다. 이는 주민등록을 기초로 일차적으로 판단하되 실제 생계관계에 관한 증명을 결합하자는 선행연구의 제안을 국외소득과 증명절차의 영역에서 구체화하는 것이다(박훈 2020, 133－135). 다만 개별 예외의 누적이 규정의 복잡성을 높인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유학생·국외취업자·귀국자 등 유형별 특례를 계속 추가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장재형·김동수 2025).

실제로 자립한 성년 직계비속에게 부모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지 않는 것과 부모와 공동생계를 유지하는 성년 직계비속의 주택을 합산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법령에 독립생계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실제 생활관계를 확인하면 두 경우를 구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별 과세원칙이나 혼인 보호를 근거로 세대 단위의 모든 과세기준이 위헌이라고 전제하지 않는다. 각 규정의 목적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생활관계에 비추어 정당화되기 어려운 차이를 해소하는 입법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각국의 제도는 세목과 정책 목적이 달라 구체적인 연령·금액 기준을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가족이 보유한 주택과 소득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를 세목별로 명확히 정한다. 둘째, 주소·소득·실제 부양·생활근거지를 서로 다른 판단요소로 구분한다. 셋째, 국외 사실의 확인곤란에는 객관적인 증빙 요건으로 대응한다. 이러한 입법방식은 적격 국외소득을 국내소득과 동일한 독립생계 자료로 인정하되 그 귀속·환산·계속성과 실제 생활비 부담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에 관한 반증을 허용하며, 허위 소득과 명목상 세대분리는 별도로 배제해야 한다는 본 연구의 입법 방향을 뒷받침한다.

나. 연령요건과 법률상 근거

연령에 관해서는 현행 30세 기준을 유지하되, 미혼인 19세 이상 30세 미만 직계비속에게 적용되는 소득·독립생계 예외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새로운 연령이나 소득금액 기준의 영향을 검증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현행 기준을 임의로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취득세 중과에서는 현행 독립생계 예외에 적격 국외소득을 반영하고, 상속 1가구 1주택 세율특례에는 이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독립생계 예외를 신설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동일한 소득 예외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특별사유는 별도로 규율한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성년 직계비속에게 30세 미만 성년 직계비속의 최저소득요건을 새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관계의 불일치에 관한 반증에서는 실제로 독립된 가계를 운영하는지를 확인하되, 자산소득이나 배우자와의 공동가계 등 생활재원을 해당 성년 직계비속의 지위에 맞게 평가해야 한다. 또한 재산세의 19세 기준을 30세로 상향하는 등 각 세목의 기준을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통일하여 종전의 별도 세대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은 본 연구의 제안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률에 규정해야 할 기본사항은 소득요건의 목적과 국내외 소득에 공통으로 적용할 원칙이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유상취득 중과와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상속 1가구 1주택 세율특례는 각각의 제도적 근거와 인적 범위를 유지하되, 독립한 성년 직계비속을 인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소득의 범위와 주민등록에 대한 반증의 기본원칙은 법률에서 정하고, 환산방법과 증빙자료 등 기술적 사항은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박훈 2020, 134−135).

영국의 추가주택 인지토지세(Stamp Duty Land Tax) 중과제도는 가족이 보유한 주택의 귀속범위를 명문으로 정한다. 매수인이 전 세계에 보유한 다른 주택을 고려하되, 가족관계에 따라 귀속시키는 주택은 배우자·시민동반자(civil partner) 및 18세 미만 자녀가 보유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성년 직계비속이나 부모가 보유한 주택은 함께 생활한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70] 이 제도의 인적 범위를 우리 취득세에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지만, 가족의 범위와 다른 가족이 보유한 주택의 귀속은 세목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실제 공동생계라는 이유만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다.

2. 국외소득의 인정범위와 증명절차의 명확화

가. 적격 국외소득의 산입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세대의 범위를 위임하는 규정에는 소득의 발생지나 소득자의 거주자 지위만을 이유로 독립생계 여부를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70) Finance Act 2003 (U.K.), sch. 4ZA, paras. 3(4), 9, 12, 17(4).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보완해야 한다. 아래 문안은 본 연구가 제안하는 개정안을 반영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의 문언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 개정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에는 그 소득을 얻은 자녀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며, 그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고 국내에서 발생한 같은 종류의 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이 호에 따른 별도 세대 인정대상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는 제외한다.**

본 개정안은 국내소득을 얻은 성년 직계비속에게 적용되는 소득유형과 계산기준을 충족하는 국외소득만을 인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성년 직계비속의 양도소득세 관련 거주자 지위나 국외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변경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서 정한 유사한 소득요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되, 지방세법령의 개정 효력이 소득세법령에 당연히 미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이에 맞추어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제3조에는 인정대상이 되는 국외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제5조에는 외국기관이나 외국 사용자가 발급한 자료와 객관적인 대체자료를 명시해야 한다. 국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의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적격 소득까지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국내 신고의무가 없는 소득이나 현지 생활비로 사용되어 국내로 송금되지 않은 소득에도 동일한 산입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나. 산정방법과 기간의 정비

국외소득의 금액은 외국의 과세표준이나 세후 수령액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국내법상 해당 소득유형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국외소득이라는 이유로 수입금액 전부를 순소득으로 보거나, 반대로 국내소득보다 많은 금액의 차감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외국에서 면세되었다는 사실과 국내 독립생계 소득요건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취급되는지는 구별해야 하며, 소득에서 제외할 금액도 국내외에 같은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외화 환산에는 소득의 귀속시기에 대

응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간편한 계산방법이 필요하다면 이를 하위법령에서 미리 정해야 한다.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환산일을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취득월 직전 12개월 동안 국내외 근무지가 바뀌었다면 해당 기간에 발생한 적격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 계속적인 소득이 있었으나 일시적인 휴직・휴업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기존 24개월 예외에도 국외소득에 대응하는 계산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에서 정한 취득 당시의 경제활동 요건은 재직증명서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 요건이 시행령이 요구하는 소득의 계속성, 주택 관리・유지 능력, 독립생계 능력과 연결되도록 그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히 두어야 한다. 이는 행정안전부고시가 무효라고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의 범위와 일시적인 실직・휴직의 취급을 법령 단계에서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국가마다 물가수준이 다르므로 같은 원화 환산소득이 모든 국가에서 같은 생활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국가별 소득기준을 따로 두면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 우선 국내소득과 같은 소득유형・환산방법・기준금액을 적용하면서 실제 가계운영 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기준금액 자체의 적정성과 국가별 조정의 효과는 별도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 기본자료와 대체자료

국외소득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국내 표준서식만을 요구한다면 제도 개선의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활동과 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자료와, 자료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때 요구할 보완자료를 구별해야 한다. 고용계약, 사용자의 재직・급여 확인, 실제 급여 지급내역이 서로 부합한다면 이를 기본자료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국가에 대응하는 공적 증명제도가 없거나 현지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대체자료를 허용해야 한다.

국외 사실의 확인곤란에는 실체적인 인정범위와 증명방법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23년분부터 국외거주 친족 중 30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을 원칙적으로 부양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71] 다만 유학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해당 납세자로부터 연간 38만 엔 이상의 생활비・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증빙으로는 친족관계서류를 공통으로 요구하고, 해당 유형에 따라 송금관계서류, 유학비자 등 서류 또는 38만 엔 송금서류와 필요한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한다.[72] 이는 종전 기준이 국외에서 상당한 소득을 얻는 친족까

71) 日本「所得税法」第2条 第1項 第34号の2.

72) 日本「所得税法」第120条 第3項, 同法施行令第262条第3・4項, 同法施行規則 第47条の2 第7項ないし

지 공제대상으로 포섭할 수 있었던 문제에 대응한 것이다. 다만 일본이 국외소득을 독립생계 자료로 직접 합산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비교법적 의미는 국외소득의 미포착을 입법상 문제로 인식하고, 실체적인 공제요건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요건을 구분하여 규율하였다는 데 한정된다. 우리 제도에서도 적격 국외소득의 산입 여부는 법령에서 먼저 정하고, 소득의 실제 귀속·계속성과 생활비 부담은 외국기관 자료와 객관적인 대체자료로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번역과 인증에 관한 요구도 확인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 자료의 작성주체나 진실성이 다투어지지 않는데도 모든 증빙에 번역공증을 요구하면 불필요하게 납세협력비용만 증가할 수 있다. 판단에 필요한 번역 범위와 추가 인증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미리 정하고, 이미 확인된 기간과 소득에 관한 자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외자료라는 이유로 무조건 간소하게 심사할 것은 아니지만, 항상 국내자료보다 높은 수준의 증명을 요구해야만 하는 이유도 없다.

3. 주민등록에 따른 판정과 반증의 허용

가. 성년 직계비속의 독립생계에 관한 반증

주민등록은 정형적인 신고와 과세처분 과정에서 가족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일차적 기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실제로 독립한 성년 직계비속에게는 주민등록 기재가 실제 생활단위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증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는 현행 주민등록 요건을 해석만으로 추정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반증의 요건과 법적 효과를 명문으로 정하자는 입법론이다. 국내거주 성년 직계비속과 국외거주 성년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이 유지된 경위가 다를 수 있지만, 독립생계의 실체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부모와 성년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방을 나누어 사용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독립생계를 인정할 수 없다. 소유권·임대차·사용대차 등 주거를 이용할 법적 근거, 실제 이용공간과 생활설비, 통상적인 생활비·관리비·공과금의 부담과 지급내역, 정기적인 가족지원의 목적, 재산의 관리·처분과 채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전기·수도 등의 계량기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비용이 합리적으로 분담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주소에서 생활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은 보조자료로 고려할 수 있지만, 독립생계 인정의 필수요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가계의 분리는 서류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된 운영관계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가족이 보유한 주택의 법적 귀속과 실제 주된 거주지의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 영국의 인지토지세 실무는 종전 주택이 주된 거주지였는지를 판단할 때 가족이 실제로 생활한 장소, 자녀의 학교, 근무지, 우편·의료·차량·지방세 관련 자료, 거주의 계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第10項；国税庁『国外居住親族に係る扶養控除等Q&A (源泉所得税関係)』(2026. 8.).

다.[73] 이는 특정 주소나 한 종류의 서류에 결정적인 효력을 부여하지 않고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실제 생활단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주민등록의 일차적 증명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그 기재가 실제 생활관계와 다를 때 반증을 허용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입법방향과도 부합한다.

국내거주 성년 직계비속에게도 동일한 반증의 기회를 부여하되, 주민등록의 이전·정정 의무는 별도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주민등록을 늦게 정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실제 독립생활을 일률적으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사후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독립생활을 당연히 인정할 수도 없다. 반증의 대상은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생활관계여야 한다.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와 과세상 가족의 범위 확정을 반드시 하나의 수단으로 함께 처리할 필요는 없다.

나. 상속 1가구 1주택 세율특례의 개정안

두 번째 입법과제는 상속 1가구 1주택 세율특례에 독립생계 예외를 신설하는 것이다. 먼저 법률에 예외의 근거를 마련한 뒤,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상속인별 판정시점, 성년 직계비속에 대한 예외, 소득요건과 주민등록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다. 이는 취득세 중과의 독립생계 예외를 해석으로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취득의 특성에 맞는 별도 규정을 두는 방식이다. 현행 제29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과 같은 조 제1항의 재외국민 상속인에 대한 제한은 그대로 유지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내지 제6항 신설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④ 제1항에 따른 1가구 해당 여부는 상속인별로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판단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독립된 주거의 이용과 가계의 운영을 통하여 상속인과 생계를 달리하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그 사람은 상속인과 다른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성년인 사람. 이 경우 혼인한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가계를 운영하는 배우자는 해당 직계비속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2. 성년인 상속인의 직계존속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다.

73) HM Revenue & Customs, Stamp Duty Land Tax Manual, SDLTM09780, SDLTM09812, SDLTM09815, SDLTM09820. SDLTM09812는 Frost (Inspector of Taxes) v. Feltham(55 TC 10 ; [1981] STC 115)을 원용한다.

1. 같은 주소에 거주하거나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국외에 거주하거나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제5항에 따른 관계에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상속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에는 그 소득을 얻은 사람이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같은 종류의 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른 소득의 종류·계산방법과 일시적 휴직·휴업 시의 산정기간은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부모와 다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을 것과 상속개시일 현재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을 것은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4항은 1가구 해당 여부를 상속인별로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상속개시 후 주소 이전 등으로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한다. 같은 항 후단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현행 제3항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여 소유자 판단과 상속인별 가구 판단을 구분한다. 이 신설안은 가구의 범위만 정할 뿐, 상속인 각자의 납세의무를 변경하지 않는다.

제5항은 생계를 달리하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상속인의 성년 직계비속(제1호)과 성년인 상속인의 직계존속(제2호)을 상속인과 다른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한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부모인 경우와 성년 직계비속인 경우를 모두 규율하되, 미성년 직계비속은 분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혼인한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가계를 운영하는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상속인의 배우자는 각 호의 대상이 아니므로 분리되지 않는다. 대습상속인인 성년 직계비속은 제2호에 따라 그 직계존속과의 관계를 판단하며, 형제자매 등 직계 외의 친족은 분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항 제1호는 같은 주소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국외거주나 재외국민등록만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 이는 주민등록의 일차적 증명기능을 유지하면서 반증을 허용하되, 국외거주 자체를 독립생계의 근거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다.

제6항 제2호는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직계비속에게 소득요건을 추가하며, 상속인 자신이 직계존속과의 관계에서 직계비속인 경우도 포함한다. 이는 제1항의 연령 의제에 예외를 인정하되 취득세 중과의 소득 예외와 같은 수준의 자립을 요구하려는 것이다. 기준금액은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국외소득은 거

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하여 국내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직계비속에게는 소득요건 없이 제5항의 실제 독립생계 여부만을 판단한다.

제6항 제3호는 소득의 종류·계산방법과 일시적 휴직·휴업 시의 산정기간만 선택적으로 준용하고, 별도 주민등록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취업·사업자등록은 요건에서 제외한다. 주민등록 요건까지 준용하면 반증을 허용하려는 제5항의 취지가 몰각되고, 상속개시라는 우연한 시점의 재직 여부로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독립생계는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해야 하므로, 사망 직전의 일회성 급여 지급이나 주소 이전 사실만으로 독립생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소득요건은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적격 소득이 기준금액에 이르는지를, 제5항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주거·가계 분리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다. 증빙기준은 취득세 중과의 소득 예외와 공통으로 마련하고 이미 확인된 자료는 다시 활용하도록 하되, 판단 시점이 다르면 상속개시일 현재의 생활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4. 형식적 세대분리의 방지와 사후관리

가. 부인사유의 구체화

세부담을 줄이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세대의 성립을 부인할 수는 없다. 실제로 가계가 분리되어 있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세부담의 감소는 해당 제도가 예정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인대상은 사실과 다른 외관을 이용한 행위로 구체화해야 한다.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국외주소를 생활근거지로 신고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자료를 작성한 경우, 지급받은 자금을 즉시 반환하면서 소득을 얻은 것처럼 표시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 지급관계와 생활관계를 조사한 후 별도 세대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가족기업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실, 증여받은 재산을 실제로 소유·관리한 사실, 성년 직계비속이 부모를 부양한 사실은 허위 소득이나 명목상 소유와 구별해야 한다.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증여세 신고가 누락되었는지, 공동생계가 유지되었는지는 각 쟁점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과 달리 실제로 공동생계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새로운 주택 합산의 근거로 삼으려면 법률에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반증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거래에 대한 실질판정의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나. 사후확인과 정보보호

사후확인은 원칙적으로 당초 신고의 진실성과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 운영해야 한다. 소득세 확정신고자료 등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현행 절차는 국외자료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되, 외국의 신고기한이 국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해당 소득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74] 납세자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득을 잠정적인 객관자료로 먼저 증명하고, 현지 신고기한이 지난 후 확정자료를 제출하여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료의 수집범위는 실체적 요건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의 최소수집 원칙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의 비밀유지·목적 외 이용 제한을 함께 준수해야 한다. 다른 세목의 과세나 다른 기관의 업무에 자료를 활용하려면 법률상 제공근거와 사용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자료제공을 요구할 때도 관련 법률에 따라 대상자, 이용목적, 자료내용,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존과 폐기 역시 정당한 보유근거와 처리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75]

성년 직계비속이 과세관청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되, 그 과정에서 성년 직계비속의 소득자료와 계좌내역이 모두 부모에게 공개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다만 부모가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을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도록 불리한 판단의 핵심사실과 처분 이유는 알려야 한다. 이미 확인한 자료를 다른 절차에서 다시 활용할 때도 법률상 제공근거와 목적 적합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기준일이 달라졌다면 변경된 기준일 현재의 사실을 새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설계는 실체적 인정요건과 정보보호 기준을 우선 정립해야 한다는 선행연구의 지적과도 부합한다(Takahashi 2017).

다. 사정변경과 경과조치

주택 취득 당시 실제로 독립하였던 성년 직계비속이 이후 귀국·실직·합가로 생활관계가 변경된 경우와 처음부터 독립생활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는 구별해야 한다. 일반적인 독립생계 예외에 일률적인 귀국금지기간이나 합가금지기간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질병이나 가족돌봄 등 정상적인 사정변경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남용은 일정한 체류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세요건 성립 당시 소득과 주거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지해야 한다. 다만 취득 후 일정 기간 안에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처럼 법령에 이미 정해진 후속요건은 그대로 확인한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예외규정은 원칙적으로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야 한다. 종전 사건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 적용대상과 기간을 경과규정에 명확히 정해야 한다.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과세처분이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종전 규정의 합리적 해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제까지 개정법 시행일 이후로 미룰 이유도 없다. 불리한 주택 합산기준이나 소득제한을 새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취득과 생활관계가 형성

74)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 제6조.

75)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된 시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거나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시행 후에 이루어진 양도라는 이유만으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생활관계에 새로운 기준을 즉시 적용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장재형 · 김동수 2025).

이 개정안은 가족이 세목별로 가장 유리한 세대를 임의로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다. 적격 국외소득을 인정하되 실제 독립생활을 요구하고, 연령 · 혼인 및 개별 특례에 관한 현행 요건도 유지한다. 이를 통해 국외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립능력이 부정되는 불합리한 차이를 줄이는 한편, 허위 소득과 명목상 세대분리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혼인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성년 직계비속이 국외 근로소득으로 독립하여 생활하더라도, 그 소득이 국내 과세범위 밖에 있다는 이유로 부모와 별도 세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국외소득의 산입 여부는 성년 직계비속이나 부모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가족의 세대 · 가구 귀속이 상속 1가구 1주택 세율특례와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의 주택 수 산정 및 특례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세목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세대 귀속은 가족 사이에 납세의무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며, 국외거주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지위도 구별해야 함을 밝혔다.

해석론으로는 행정안전부고시가 소득세법상 소득유형과 계산요소를 인용할 뿐 국외원천소득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고시가 정한 소득유형에 해당하고 실제 지급과 귀속이 확인되는 국외소득은 발생지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생계 판단에 산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는 조심 2022지1837 결정과 다른 해석론으로, 다른 요건을 면제하거나 거주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비교법적으로는 미국의 적격 자녀(qualifying child)와 적격 친족(qualifying relative) 구분, 일본의 생계동일성 판단과 국외거주 친족의 증빙요건, 영국 추가주택 인지토지세 중과제도의 가족주택 귀속규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가족의 귀속범위를 세목별로 명확히 정하고, 주소 · 소득 · 부양 · 생활근거지를 구별하며, 국외 사실을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입법론으로는 먼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 후단에 국외소득을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하고 국내의 같은 종류의 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는 원칙을 명시할 것을 제언하였다. 행정안전부고시에는 인정대상 국외소득의 범위와 외국기관 자료 · 대체자료, 환율 기준, 근무지 이동과 귀국자의 소득 처리를 규정하되 과도한 번역 · 공증 요구는 지양하도록

제안하였다. 다만 이 개정의 효력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 당연히 미치지는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신설안은 상속인별로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1가구 여부를 판단하고, 상속인의 성년 직계비속이나 성년인 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생계를 달리하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다른 가구로 보는 내용이다. 같은 주소나 주민등록표 기재만으로 이를 부정하지 않고 국외거주만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며, 반증 기회는 국내 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였다.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직계비속에게는 같은 소득금액 기준을 요구하되 별도 주민등록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직은 요건에서 제외하였고,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직계비속에게는 새로운 소득요건을 부과하지 않았다.

제도 남용에 대해서는 국외소득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 허위 급여, 이용하지 않는 국외주소 등 구체적인 부인사유와 사후확인으로 통제할 것을 제언하였다. 아울러 자료의 최소수집과 비밀유지, 부모에 대한 처분 이유 고지, 경과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공개된 법령·판례·심판결정과 문헌을 중심으로 한 규범적 연구이므로, 기준금액의 적정성, 분쟁 빈도, 국가별 증명비용에 관한 실증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소득의 발생지를 경제적 자립의 대리기준으로 삼지 않고 국내외 성년 직계비속에게 동일한 실체적·증명적 기준을 적용하는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과세형평과 조세회피 방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방향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함."
"The study in this manuscript has bee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Ethical Guidelines set forth by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AI 사용 공시] 본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AI Disclosure] No generative AI tool was used in the preparation of this manuscript.

[이해상충 공개] 참여 저자 모두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기타 이해상충이 없음을 확인함.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 no conflicts of interest associated with this manuscript.

REFERENCES

Alm, J., and M. I. Melnik. 2005. Taxing the “Family” in the individual income tax. *Public Finance and Management* 5 (1) : 67－109.

Chung, H. Y., and H. Park. 2021. Problems and proposals for improvement regarding the determination of the number of houses owned in the real estate-related tax system. *Local Tax Review* 8 (2) : 23－62. [Printed in Korean]

Heo, W. J., and J. A. Kim. 2022. Reform of acquisition-tax surcharges on foreigners’ acquisition of multiple homes. Policy Research Report 2022－8.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 1－114. [Printed in Korean]

Hwang, B. S. 2026.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the household-based taxation standard in Korea’s capital gains tax on residential property. *Asian Tax Journal* 27 (2) : 207－230. [Printed in Korean]

Jang, J. H., and D. S. Kim. 2025. A study on the complexity of tax relief for one-house ownership and its solution. *Seoul Tax Law Review* 31 (2) : 317－364. [Printed in Korean]

Lee, D. S. 2020. Married couple as a tax unit for income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eoul Tax Law Review* 26 (3) : 311－351. [Printed in Korean]

Ma, J. H., and J. Y. So. 2020. Case analysis and reform of housing acquisition tax involving family members : Household acquisitions and gifts subject to debt. Policy Research Report 2020－45.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 1－116. [Printed in Korean]

Mason, R., and M. S. Knoll. 2012. What is tax discrimination? *Yale Law Journal* 121 : 1014－1116.

Park, H. 2019. Interpretation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on the borrowing concept in tax law.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68 (3) : 511－552. [Printed in Korean]

_____. 2020. Reasonable improvement measures of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and local income tax-related with real estate for the unification of tax units. *Local Tax Review* 7 (2) : 109－140. [Printed in Korean]

Roughou, A. 2024. Personal and family tax advantages granted to non-residents : the CJEU takes a step further : A comment of CJEU, 10 March 2022, Commission v. Belgium, C-60/21. *Studi Tributari Europei* 14 (1) : II.83－II.100.

Takahashi, Y. 2017. “租税システムの情報収集機能に基づいた公的・私的給付統合に関する研究”. FY2015 Annual Research Report, KAKENHI Project No. 26380031. [Printed in Japanese]

Woo, B. T., and W. Y. Kim. 2022. A study on the conflic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system and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by household classification.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23 (5) : 33－52. [Printed in Korean]

국내 참고문헌

마정화・소준영. 2020.「가족 관련 주택 취득세 사례 분석과 개선방안 －1세대의 취득과 가족 간 부담부증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0－45.

박 훈. 2019. “판례에 나타난 세법상 차용개념의 해석론”. 법조 제68권 제3호 : 511－552.

_____. 2020. “세대(世帶) 관점에서 바라본 부동산 관련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의 합리적 과세단위 개선방안”. 지방세논집 제7권 제2호 : 109－140.

우병탁・김완용. 2022. “세대 구분에 따른 과세제도와 주민등록법제와의 상충관계에 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23권 제5호 : 33－52.

이동식. 2020.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부합산과세제도 도입방안”. 조세법연구 제26권 제3호 : 311－351.

장재형・김동수. 2025. “1세대1주택 제도 복잡성의 원인과 그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31권 제2호 : 317－364.

정혜윤・박 훈. 2021. “부동산 관련 세제상 보유주택 수(數) 판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지방세논집 제8권 제2호 : 23－62.

허원제・김진아. 2022.「외국인의 다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8.

황범석. 2026. “주택 양도소득세 세대별 과세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sian Tax Journal 제27권 제2호 : 207－230.